

※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신청일정 안내

신청 대상자	신청일자	방법	장소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	2022.09.01(목)	인터넷 청약 (09:00 ~ 17:30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앱(청약홈)

## 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세대 안내

구분	84A	84B	84C	99A	99B	합계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6	3	3	2	2	16

## ■ 신청자격 요건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용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)</li> </ul>
자격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</li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</li> <li>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(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</li> <li>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.</li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람. ※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람.</li> </ul>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.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(거제시) 거주자가 우선함. ②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.</li> <li>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)'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</li> <li>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li>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기타 본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안내문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름.</li> </ul>

■ 배점기준표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할 서류 등
① 무주택기간	32	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	0	8년 이상~9년 미만	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으로 가산하며,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.</li> <li>▶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,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.</li> <li>▶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청약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(노부모)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함.</li> <li>▶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함.</li> <li>※ 특별공급의 경우 소형·저가 주택 소유시 유주택자임</li> </ul>
		1년 미만	2	9년 이상~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~2년 미만	4	10년 이상~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~3년 미만	6	11년 이상~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~4년 미만	8	12년 이상~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~5년 미만	10	13년 이상~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~6년 미만	12	14년 이상~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~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7년 이상~8년 미만	16		-			
② 부양가족수	35	0명	5	4명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부양가족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</li> <li>▶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</li> <li>▶ 직계비속(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)</li> <li>※ 미혼자녀만 인정(이혼자녀는 불인정)</li> <li>※ 만 30세 이상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</li> </ul>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 이상	35	
		3명	20		-	
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~9년 미만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청약통장 (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)</li> </ul>
		6개월 이상~1년 미만	2	9년 이상~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~2년 미만	3	10년 이상~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~3년 미만	4	11년 이상~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~4년 미만	5	12년 이상~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~5년 미만	6	13년 이상~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~6년 미만	7	14년 이상~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~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		7년 이상~8년 미만	9		-	
총점	84	※ 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+②+③				